

< 의 견 서 >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u>11.4. 「건축법 시행령」</u> <u>제91조의3제8항에 따</u> <u>라 구조안전의 확인</u> <u>에 관하여 설계자에</u> <u>게 협력하는 건축구</u> <u>조기술사는 별표 설</u> <u>계도서 작성방법에서</u> <u>정하는 구조분야 도</u> <u>서를 자신의 책임 하</u> <u>에 작성하여야 하며,</u> <u>설계자는 건축구조기</u> <u>술사의 책임하에 작</u> <u>성한 구조분야 도서</u> <u>에 대하여 구조분야</u> <u>외의 설계도서와의</u> <u>정합성 여부 등을 확</u> <u>인하여 필요시 건축</u> <u>구조기술사에게 수정</u> <u>을 요청할 수 있다.</u>	삭제	건축허가도면은 건축도면(cad)이 완성 된이후 완성된 건축도면을 받아서 설 비,전기,소방,통신도면등은 관계기술자 의 협력으로 도면작성이 가능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도면은 건축물디자인 시작 과, 건축계획도면작성, 심의도면, 허가 도면작성시구조부재,형태 레벨up,down 등을 고려하여 건축과 구조도면은 동시에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리해서 도면작성을 할 수 없는 특수 성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현실성과 실용성이 없어 삭제되어야한다. 현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구조기술사가 건축사사무소에 파견와서 함께 도면작 성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는 문제도 발 생함과 현재 건축사사무소수는 16982 개에 비해 구조사무실수는 788개에 불 과 하여 함께 동시에 도면작업을 할 수 없는 협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축,구조도서는 현행대로 건축사가 작성하고,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면을 확인후 서명날인만 잘하

여도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안하고, 날인을 안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려는 가장 큰 의도는 구조계산서 작성만 하는 업무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구조도면 작성업무를 독점하여 수익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며, 또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희소성을 이용하여 구조도면 작성비를 몇배 상향하려는 목적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건축사제도가 시행 후 59년간 축척된 경력으로 구조도면을 작성한 건축사사무소업무를 갑자기 시행한다면 그 구조도면의 수준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6,982개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788개 구조사무실수에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업체수와 직원수로는 역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구조사무실은 건축주와 계약후 노하우와 기술력이 축척된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

구조기술사사무실은 LH에서 구조계산및 구조도면작성용역을 체결후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LH용역 구조 별도발주건만 전수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 공고문에 대한 의견서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구조도면의 작성주체와 책임은 현재도 명확하다고 판단됨.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작성은 총괄책임으로 건축,구조,설비,전기,소방,통신등 모든책임을 지고 있다.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허가권자 및 법원소송시 대한민국 모든 판사의 판결은 건축,구조도면 및 협력업체의 전기,설비,소방,통신,토목등도면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대하여 총괄 책임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현재도 책임은 명확 하다고 본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중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

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확인하고 날인하는 행위를 안하기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을 ⑦ ⑧항을 이행한다면 아무런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행법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참고－ “건축법시행령제32조①항(구조안전의확인)”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현재 건축법에도 명확하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업무이다.

또한 설계자는 구조분야외의 설계도서의 정합성등을 확인한다면 구조도면은 별도로 진행되기에 전체적인 총괄 정합성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도면은 주체가 하나인 건축사 총괄 관리로 통일성이 있어야 허가도면은 완성 될 수 있다.

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조문 정비(안 11.1 개정)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을 추가하고 건축법 시행령 인용 조문 관련 오기를 정정

→현행 건축법시행령에_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은 포함되어 있음.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토목·지질 전문분야 직무범위 조문 정비(안 11.3 개정)

「기술사법」 상 등록 직무 범위와 실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 굴착 등과 직접 관계된 토목·지질 전문분야의 직무범위로 개정

라. 건축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안 2.6 및 10.1 개정)

건축법 인용 조문(용어의 정의 중 ‘중간설계’)과 시행령 조문 인용 표현(구조계산서의 작성 대상)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3. 의견 제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rgo0813@molit.go.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3) 팩스 : (044) 201 - 5574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 201 - 3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의견서 >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목 차>

1.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진성
	담당부서 (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건축정책관		연락처	044-201-3767
	과장	건축정책과장		이메일	archi@mail.go.kr

2024. 07.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2.규제조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		
	3.위임법령	건축법 제23조, 제48조 및 제67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인천검단 사고 및 건축현장 <u>철근 누락 사태</u>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u>구조설계와 관련하여 책임성 부여가 미흡하고 검증 체계도 부실하여 설계오류가 반복되는 상황</u>임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포함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23.12.) →철근누락은 인천검단사고의 원인조사결과 1.구조기술사의구조계산오류.2.구조도면오류.3.시공오류.4.감리자 부실등 4대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시공자이다.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면의오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설계자에게 통보후 변경도면을 받아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조도면을 누가 작성하는 것이 근본 원인해결은 아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2.구조설계 관련하여 책임성부여가 미흡한 것은 아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명확히 되어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중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확인후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설계오류가 반복되는것보다는 시공자의 철근배근을 하는 철근공이 대부분 외국근로자로 숙련공이 없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이며, 철근공의 작업을 관리하여야하는 건설회사의 시공관리가 가장큰문제이다.								
	7.규제내용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동 기준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현재 건축법에도 명확하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업무이다. 또한 설계자는 구조분야외의 설계도서의 정합성등을 확인한다면 구조도면은 별도로 진행되기에 전체적인 총괄 정합성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도면은 주체가 하나인 건축사 총괄 관리로 통일성이 있어야 허가도면은완성 될 수 있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td>자격 등록 건축사</td><td>15358</td></tr> <tr> <td>피규제자</td><td>건축구조기술사</td><td>1290</td></tr> </tbody> </table> →업무신고 등록자수는 잘못 기재 되었음. 건축사 16,982명(건축사협회자료참조)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격 등록 건축사	15358	피규제자	건축구조기술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격 등록 건축사	15358								
피규제자	건축구조기술사	1290								

		구조기술사 788명(기술사회 자료참조)		
	9.규제 목표	구조도면의 작성 <u>주체와 책임</u>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 <u>국민 안전에 기여</u> →현행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한 전체도면의 총괄책임은 건축사에 있고, 도면작성주체와 책임도 건축사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개선할 이유가없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 허가도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이다 (구조기술사법에 명기되어 있지않다). 부속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의한 계약으로 구조계산서 작성및 구조도서확인 과 날인의 책임은 건축사,구조기술사에 있고 구조도면 작성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 국민안전에 기여할 가장 큰 숙제는 건설회사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20년씩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내 숙련된 철근공은 떠나가고 도면도 파악못하는 미숙련 외국근로자가 전부인 철근공과 시공관리를 해야할 건설회사 시공능력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건축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동 규칙 별표 2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작성·제출되어야 했던 <u>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u> 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면 작성, 업무연락 및 <u>도면 확인</u> 등에 <u>소요되는 비용은 개정 전·후 차이가 미미</u>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일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되면 업무신고대비 건축사는 16,982명, 구조기술사 788명이므로 희소성으로 인한 구조도면 작성비용은 2~3배이상 상승하여 국민부담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다 (사례) 3층이상 필로티 구조감리 시행후 다세대주택기준으로 건축사는 감리비가 한달에 200만원에 비하여 희소성으로 인하여구조		

		기술사 피로티 감리는 2일에 300만원을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있음.		
기타	12.규제 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 11.3. (생 략) <u><신 설></u>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한 구조분야 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철회되어야함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23년 인천검단 사고, 건축현장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23.12.)

-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책임성 부여가 미흡하고 검증 체계도 부실하여 설계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

→철근누락은 인천검단사고의 원인조사결과

1.구조기술사의구조계산오류.2.구조도면오류. 3시공오류. 4.감리자 부실등 4대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가장큰 문제는 시공잘못이다.

법에의하면 도면의오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설계자에게 통보후 변경도면을 받아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 하지 않은 것이다.

구조도면을 누가작성하는 것이 원인해결이 아니다.

2.구조설계 관련하여 책임성부여가 미흡하고 검증체계가 부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명확히 되어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중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등 구조 관련 서류에 확인후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설계오류가 반복되는것보다는 시공자의 철근배근을 하는 철근공이 대
부분 외국근로자로 숙련공이 없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이며, 철근공의
작업을 관리하여야하는 건설회사의 시공관리가 가장큰문제이다.

대법원은 “건설기술관리법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외에 단계적이
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
려는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
서의 검토를 게을리하여 경험있는 기술자라면 미리 알아차릴수 있는 철
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배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0.8.22. 98도4468 판결참조)

○ (정부개입 필요성)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
여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

-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구조도면 작성에 대한 내용 명확화

→현행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한 전체도면의 총괄책임은 건축사에 있
고, 도면작성주체와 책임도 건축사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개선할 이유가없음.

부속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의한 계약으로

구조계산서 작성및 구조도서확인과 날인의 책임은 구조기술사에 있고
구조도면 작성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

국민안전에 기여할 가장 큰 문제는

건설회사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20년씩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내 숙련된 철근공은 떠나가고

도면도 파악못하는 미숙련 외국근로자가 전부인 철근공과

시공관리를 해야할 건설회사 시공능력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 기준 상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책임성 부여가 미흡하고 검증 체계도 부실하여 설계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므로,

→철근누락은 인천검단사고의 원인조사결과

1.구조기술사의구조계산오류.2.구조도면오류. 3시공오류. 4.감리자 부실등 4대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가장큰 문제는 시공잘못이다.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

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면의 오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설계자에게 통보후 변경도면을 받아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조도면을 누가 작성하는 것이 근본 원인해결은 아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면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 권한을 관련 기준으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한 전체도면의 총괄책임은 건축사에 있고, 도면작성주체와 책임도 건축사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개선할 이유가없음.

부속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의한 계약으로

구조계산서 작성및 구조도서확인파 날인의 책임은 건축사,구조기술사에 있고 구조도면 작성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

국민안전에 기여할 가장 큰 숙제는

건설회사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20년이상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내 숙련된 철근공은 떠나가고

도면도 파악못하는 미숙련 외국근로자가 전부인 철근공과

시공관리를 해야할 건설회사 시공능력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 구조분야 설계도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 및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검단주차장 사고는 시공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도서오류로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책임소재는 현재도 명확하다고 본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의한 계약으로

구조계산서 작성및 구조도서확인과 날인의 책임은 건축사,구조기술사에 있고 구조도면 작성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

국민안전에 기여할 가장 큰 숙제는

건설회사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20년이상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내 숙련된 철근공은 떠나가고

도면도 파악못하는 미숙련 외국근로자가 전부인 철근공과

시공관리를 해야할 건설회사 시공능력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 관련 조문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이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고려 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건축사의 업무가 30%이상 감소할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용불

가하다고 본다.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일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되면 업무신고대비 건축사는 16,982명, 구조기술사 788명이므로
최소성으로 인한 구조도면 작성비용은 2~3배이상 상승하여 국민부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례) 3층이상 필로티 구조감리 시행후 다세대주택기준으로
건축사는 감리비가 한달에 200만원에 비하여 최소성으로 인하여구조기
술사 피로티 감리는 2일에 300만원을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축구조기술사	(1차) '24.4.24.(수) 10:30 / 정부 세종청사 회의실 / 대면회의 (2차) '24.5.10.(금) 10:00 /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대면회 의	제도개선 필요	이해관계자 간 관련사항 협의
건축구조기술사	上 同	현행 유지	上 同

→이해관계자간 관련사항의 협의가 되지않았으며, 의견이 수렴되지않
은 사항이다

구조기술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항이다

3. 규제목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구조분야 도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설
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최소화 하고 건축물 구조안전의 내실
을 제고함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

→설계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은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이다

구조계산서 작성오류및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중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등 구조 관련 서류에 **확인후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해야하는 가장큰 문제는

건설회사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20년씩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내 숙련된 철근공은 떠나가고

도면도 파악못하는 미숙련 외국근로자가 전부인 철근공과

시공관리를 해야할 건설회사 시공능력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건축물의 구조설계 및 구조설계도서 간 **정합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 설계도서 상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물의 **설계에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구조도면을 누가작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아니다.

철근누락은 인천검단사고의 원인조사결과

1.구조기술사의구조계산오류.2.구조도면오류. 3시공오류. 4.감리자 부실등 4대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가장큰 문제는 시공잘못이다.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면의오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설계자에게 통보후 변경도면을 받아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조도면을 누가 작성하는 것이 근본 원인해결은 아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

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등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건축물의 구조분야 작성자의 자격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해당있음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동 개정안은 건축구조설계도서의 작성주체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하도록 정하는 것이므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근로자수 등과 무관한 바,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건축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계자 등에 부과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지 아

니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바,
- 피규제자인 건축관계자(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판단됨.

건축사는 16,982명이 해오던업무를 구조기술사 788명이 동일시간안에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에는 구조기술사수가 10명 이하임을 감안하면 정체로 인해 설계기간의 10배이상 길어질 수 있고, 급변하는 현장의 설계변경도서 또한 기간안에 처리할수 없어 현장공사가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축구조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 기존 건축인허가 행정절차에 변동이 없어 집행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예산소요 사유 없음

→공공기관및 대다수 국민의 재정에는 큰 영향을 준다.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일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되면 업무신고대비 건축사는 16,982명, 구조기술사 788명이므로
희소성으로 인한 구조도면 작성비용은 2~3배이상 상승하여 국민부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례) 3층이상 필로티 구조감리 시행후 다세대주택기준으로
건축사는 감리비가 한달에 200만원에 비하여 희소성으로 인하여구조기
술사 피로티 감리는 2일에 300만원을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있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23.12.11.)
-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 책임 명확화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현재 건축법에도 명확하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업무이다.

모든도면은 주체가 하나인 건축사 총괄 관리로 통일성이 있어야 허가도면은완성 될 수 있다.

현행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한 전체도면의 총괄책임은 건축사에 있고, 도면작성주체와 책임도 건축사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개선할 이유가없음.

- 상기 방안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의

* 2회('24.4.24., '24.5.10.)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문구 조정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관한 방침 수립('24.7.9.)

→이해관계자간 관련사항의 협의가 되지않았으며, 의견이 수렴되지않은 사항이다

구조기술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항이다

2. 향후 평가계획

-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 현황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 등에 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계 전문가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설계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은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이다

구조계산서 작성오류및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중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등 구조 관련 서류에 **확인후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해야하는 가장큰 문제는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20년씩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내 숙련된 철근공은 떠나가고

도면도 파악못하는 미숙련 외국근로자가 전부인 철근공과

시공관리를 해야할 건설회사 시공능력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도면의 오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설계자에게 통보후 변경도면을 받아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구조도면을 누가 작성하는 것이 근본 원인해결은 아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결론

<구조기술사>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공능력 향상

상기 2개조항만 잘 이행하면 국민안전에 기여할것으로 본다.